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정책실로 이관하고,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구정책실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연금정책관으로 편제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서비스정책관”을 모두 “연금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를 “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2호부터 제5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을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을 “국민연금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2.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7조제15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을 “국민연금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제7조제16항제7호,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제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 계획의 수립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제7조제17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을 “연금급여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의 제목 “(인구정책실)”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인구아동정책관 및 노인정책관”을 모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

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인구정책실”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노인건강과 및 청년정책팀을”을 “노인건강과, 청년정책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3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②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9. 사회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㉓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5. 삭제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4.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㉔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3. 삭제
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5. 삭제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6.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㉕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생략)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 및 <u>사회서비스정책관</u> 으로 하며, 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 및 <u>사회서비스정책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u>연금정책관</u> ----- ----- ----- <u>연금정책관</u>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⑤ <u>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2호부터 제53호</u> ----- ----- -----.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u>사회서비스정책과</u> , <u>사회서비스사업과</u> ,	⑥ ----- ----- ----- ----- ----- <u>국민연금정책과</u> , <u>국민연금재정과</u> , <u>기초연</u>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⑭ (생략)

⑮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

--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⑦ ~ ⑭ (현행과 같음)

⑮ 국민연금정책과장-----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 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u>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u>	<u>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u>9. 사회서비스 경쟁축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u>	<u>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u>
<u>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u>	<u>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u>
<u>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11.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u>
<u>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u>	<u>12.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u>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u>	<u>1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u>	<u>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u>
<u>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감</u>	<u><삭 제></u>

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⑩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⑩ 국민연금재정과장-----
-----.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u>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u>	3. <u>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u>
4. <u>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u>	4. <u>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u> -----
5. <u>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u>	5. <u>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u>
6. <u>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6. <u>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u>
7. <u>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 13. <u>삭 제</u>	
14. <u>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u>	<u><삭 제></u>
15. <u>삭 제</u>	
16. <u>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7. <u>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8. <u>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9. <u>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0. <u>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1. <u>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2. <u>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삭 제></u>
23. <u>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u>	<u><삭 제></u>
24. <u>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5. <u>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⑰ <u>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⑰ <u>기초연금과장</u> ----- -----.
1. <u>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u>	1. <u>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u> 나. <u>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u> 다. <u>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u> 라. <u>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u>

	<u>장애 관한 사항</u> <u>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u> <u>육·홍보</u> <u>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조</u> <u>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u>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u> <u>축·운영에 관한 사항</u>
<u>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u> <u>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u> <u>및 운영</u>	<u>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u> <u>각 목의 사항</u> <u>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u> <u>계획의 수립</u> <u>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u> <u>한 사항</u>
<u><신 설></u>	<u>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u> <u>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u> <u>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u> <u>에 관한 사항</u>
<u>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u> <u>한 지원 및 육성</u>	<u>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u> <u>적정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u> <u>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u> <u>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u>
<u>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u> <u>설에 관한 사항</u>	<u>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u> <u>각 목의 사항</u> <u>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u> <u>리 및 개선</u>

<u><신 설></u> 8. ~ 14. 삭 제 <u>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u> 17. 삭 제 <u>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u> <u>1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u> <u>21.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u> <u>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u> <u>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u>	<u>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u> <u>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u> <u>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u> <u>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원 및 육성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의 지원 및 육성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6.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
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⑱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
에 관한 기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⑱ 연금급여팀장-----
-----.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
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
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
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
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
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
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

<삭 제>

<삭 제>

<u>총괄 · 조정</u>	
7. <u>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8. <u>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u>	<삭 제>
9.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10. <u>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u>	<삭 제>
11. <u>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삭 제>
12. <u>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 ·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u>	<삭 제>
제8조(인구정책실) ① <u>인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u>인구정책실장</u>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인구아동정책관</u> 및 <u>노인정책관</u>으로 하며, <u>인구아동정책관</u>	제8조(인구 · 사회서비스정책실) ① <u>인구 · 사회서비스정책실장</u>----- ----- --. ② ----- ----- <u>인</u> <u>구 · 사회서비스정책실장</u> ---- -- <u>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u> 및 <u>사회서비스정책관</u>-----

및 노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삭제

< 신설 >

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및 청년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⑫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③·④ (현행과 같음)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3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건강과, 청년정책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

⑧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⑮ (현행 제20항과 같음)

<신 설>

②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9. 사회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신 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
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
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
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
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
영에 관한 사항

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
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감
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
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
템 구축·운영

㉓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
업의 기본계획 수립·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
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5. 삭제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

<신 설>

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

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에 관한 사항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

획의 수립 및 조정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

시

24.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㉔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적 · 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3. 삭제

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5. 삭제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

<신 설>

한 사항

21.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
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
원 및 육성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의 지원 및 육성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6.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
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
에 관한 기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
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 · 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 · 조정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 ·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

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 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

여액 조정 총괄

12.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

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

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개

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

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

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
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
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
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
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
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
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
육 및 홍보

⑤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조정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
한 사항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
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

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
육·홍보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조
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
한 사항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
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
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
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
리 및 개선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
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⑥ 연금급여팁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
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
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